

독일 자영업적 자유직업인의 사회보험*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머리말

독일에서 프리랜서라는 용어는 최근에야 등장한 표현이다. 현재 독일에서 프리랜서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협의로는 IT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가운데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광의로는 보다 넓은 의미의 소위 ‘자유직종(Freie Berufe)’을 가리킬 수 있다. 자유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은 자유직업인(Freie Berufler)이라는 이름으로 칭하여져 왔다. 독일식의 자유직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프리랜서와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닐 수 있다. 다만, 그 정의와 그에 속한 직업들을 살펴보면, 통상 한국에서 생각하는 프리랜서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존재한다. 자유직업인들은 크게 두 가지 성향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종속적 근로자 신분의 사람들로, 그들은 일반적인 사회보험의 원리를 따른다. 다른 하나는 자영업적 자유직업인으로, 그들에 대해서는 원래 별도의 사회보험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나, 근래에 단행된 개혁조치로 인해 그들도 종래의 사회보험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독일에서 넓은 의미의 프리랜서를 의미하는 자유직업인, 그 중에서도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주변적 위치에 있는 자영업적 자유직업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 조망해 본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 예정인 이승렬 외(2013), 『프리랜서의 노동과 위험: 프리랜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에 필자가 참여하여 수행한 연구 결과임을 밝힌다.

다.¹⁾ 먼저 자유직업인에 대한 정의와 그들의 규모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어서 자영업적 자유 직업인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에 대한 주요 사회보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자유직업인의 정의와 규모

자유직업인의 정의

자유직업인에 대한 정의는 독일 내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며, 유럽 차원에서도 그와 관련한 법규 및 판결을 찾을 수 있다(BFB: 2012). 그 중에 독일의 소득세법(§ 18Abs.1Nr.1EStG)과 파트너십법(§ 1Abs.2S.1PartGG)에 내려진 법률적 정의가 주요하다. 그 중에서 파트너십법에 따르면, 자유직업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직업적 특성 또는 창조적 재능을 기반으로 하며, 위탁자와 공의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적이고 책임감 있는 독립 콘텐츠를 창출하는 직업”을 가리킨다.

파트너십법과 소득세법에서 규정된 자유직업인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IFB, 2006), 그것은 각각 ‘카탈로그상의 직업군’, 그와 ‘유사한 직업군’, 그리고 ‘업무상의 자유직업군’ 등이다. 첫째, ‘카탈로그상의 직업군(Katalogberufe)’은 해당 법규 내에 이미 구체적으로 그러한 직업들이 열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언급한 법률들에 어떤 직업이 자유직업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²⁾ 그들은 부문별로 크게 네 가지 집단으로 나뉜다. 하나는 ‘의료관련 직업’으로, 예컨대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임상치료사(Heilpraktiker), 물리치료사(Krankengymnasten), 조산보조원(산파: Hebammen), 자영업적 안마사(Heilmasseure), 심리치료사(Diplom-Psychologen) 등이다. 다음으로 ‘법, 세금, 경제경영 고문관련 직업’

1) 이 절의 집필을 위하여 활용한 자료는 주로 자유직업인협회(BFB)의 웹사이트 자료와 발간물들, 기타 독일 사회보장과 관련된 문헌들, 그리고 특히 필자가 지난 2013년 7월 초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BFB를 방문하여 이 협회의 사무총장과 수행한 인터뷰를 기초로 하였다.

2) 일부 직업은 파트너십법(PartGG)에만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EStG)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로, 여기에는 변호사협회 회원(Rechtsanwaltskammer),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세무대리인(Steuerbevollmächtigten), 경영컨설턴트(beratende Volks- und Betriebswirte), 공인회계사(Buchprüfer, vereidigte Buchrevisoren) 등이 속한다. 그 다음으로는 ‘자연과학/기술관련 직업’으로 측량기사, 엔지니어, 건축가, 상업화학자(Handelschemiker), 수로안내인/파일럿(Lotsen), 주 직업상의 감정사(hauptberuflichen Sachverständigen) 등이다. 끝으로 ‘정보전달 관련 직종 및 문화 직종’이 있으며, 이는 기자, 카메라기자, 외교관, 번역가(유사직종), 학자, 예술인, 작가, 교사, 교육자 등을 말한다.

자유직업인의 두 번째 집단은 카탈로그상의 자유직업군과 ‘유사한 직업군’이다. 카탈로그 직업군과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유사직종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각각 연방재정법원의 판결(Rechtssprechung)에 의해 규정된다. 지금까지 판결된 적이 있는 유사직업군의 직종들은 대개 카탈로그 직업군과 유사한 형태로 종사하거나, 직업활동을 위한 자격요건(Qualifikation)에 있어서 그것과 유사한 내용을 지니는 직종들이다. 예를 들면 치과의사는 카탈로그 직업군에 속하지만, 그와 유사한 ‘형태’로 행해지는 직종, 즉 치과보조사(Zahnpraktiker)는 ‘유사직종’에 속한다. 경영 컨설턴트(beratende Volks- und Betriebswirte)는 카탈로그 직업에 속하지만, 유사한 ‘형태’로 종사하는 마케팅자문인(Marketingberater)은 ‘유사직종’에 해당한다. 하지만 유사직종이라고 판결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경우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사직종’이라는 판정을 온전히 내리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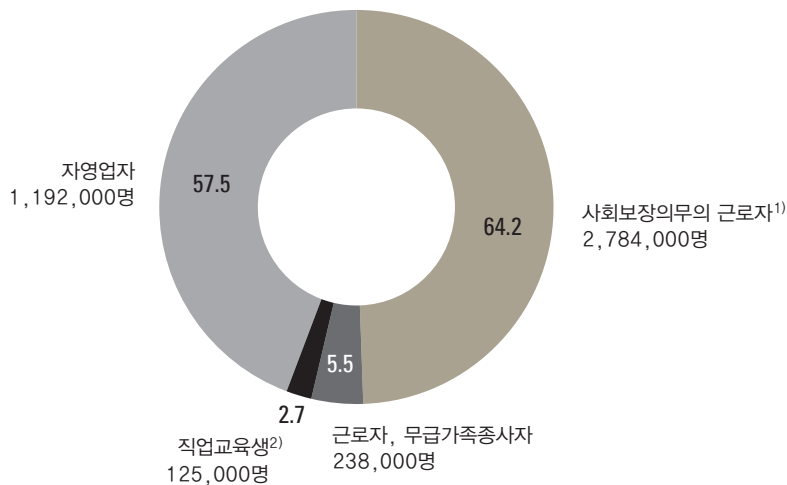
자유직업인의 세 번째 유형은 ‘업무상의 자유직업(Tätigkeitsberufe)’이다. 업무상 자유직업에서의 업무란 대개 “자영업적으로 행해지는 학문직, 예술직, 문필직, 강의직 또는 교육직상의 업무(selbständig ausgeübte wissenschaftliche, künstlerische, schriftstellerische, unterrichtende oder erzieherische Tätigkeit)”를 가리킨다. 대체로 일체의 새로운 노동 영역과 직업교육인의 발전은 업무상 자유직업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각 직업 영역 내에서 학문직, 예술직, 문필직, 강의직 또는 교육직상의 직업들은 그 유사한 성격의 요구에 맞추어 소득세법상 자유직업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IFB, 2006).

자유직업인의 규모와 세부 구성

자유직업인들은 규모상 독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으며 최근에 그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연방자유직업연합(BFB)의 자료에 따르면, 자유직업인으로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이들의 규모는 2012년에 433만9천 명에 달하였다. 2012년에 독일의 경제활동 인구가 약 4,150만 명(연방통계청 기준)에 달하였음을 감안하면, 그중에서 자유직업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10.5% 정도에 달한 셈이다. 전술하였듯이, 이들 자유직업인들의 고용관계는 사회보장의무를 지니는 근로자로서의 고용계약 관계와 자영업자로서의 형태가 섞여 있다. BFB의 집계에 따르면, 경제활동 중인 자유직업인 278만여 명은 사회보장의무를 지니는 근로자들이다. 경제활동 중인 자영업적 자유직업인은 120만 명에 이른다. 그 밖에 12만여 명의 직업교육생들도 있으며, 24만 명에 달하는 이들은 근로자이지만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사회보장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다(그림 1).

[그림 1] 독일의 자유직업인 경제활동인구(총 약 4,339,000명)

(단위 : %)



주: 1) 2011년 6월 30일 기준(직업교육생 제외); 임시적인 결과; 카테고리의 분류방법 변화로 인해 작년과 비교할 때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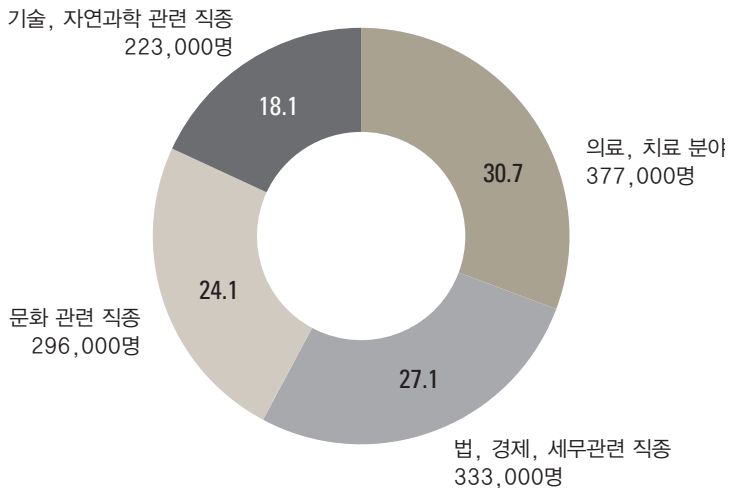
2) 2012년 12월 31일 기준의 잠정적 결과(기술, 자연과학적 직업과 상업적 직업 포함).

자료: 직업연합들 및 공적 통계, BFB(연방자유직업연합)의 통계, 부분적으로는 추정된 것(자료: BFB).

이들 가운데 주목할 대상은 바로 약 120여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적 형태를 취하는 자유직업인으로, 그들은 일반적인 종속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과 다른 형태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그들 중 네 가지 주요 직종에 해당하는 이들의 규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 및 치료 분야에 약 37만여 명이 종사하여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법, 경제 및 세무관련 직종에는 약 33만여 명이 종사한다. 기술 및 자연과학 관련 직종의 경우 약 23만 명에 달하며, 끝으로 문화관련 종사자는 약 30만 명에 육박한다(그림 2).

[그림 2] 독일의 자영업적 자유직업군의 주요 업종별 분포(총 약 1,229,000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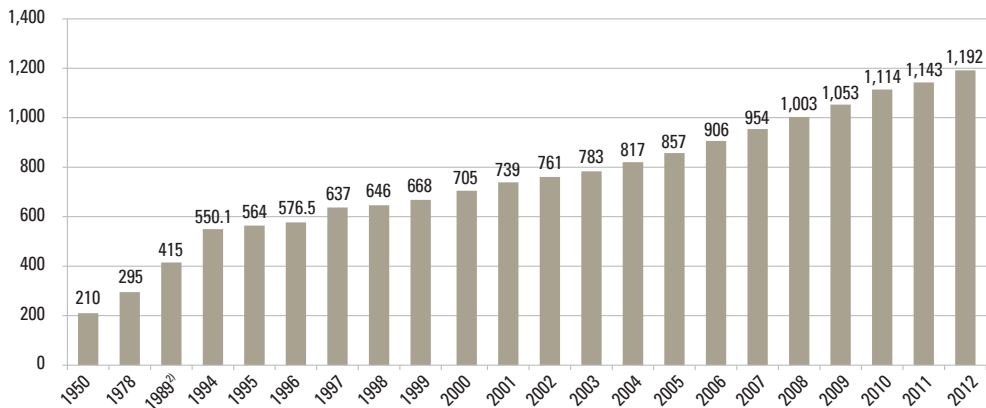


자료 : 직업연합들 및 공적 통계, BFB(연방자유직업연합)의 통계, 부분적으로는 추정된 것(자료: BFB).

자영업적 자유직업인의 규모는 지난 1950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1950년대만 해도 이들은 21만 명 수준이었던 것이 1990년에 들어 50만 명대로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급기야 100만 명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증대되었다(그림 3). 자영업적 자유직업의 직종을 좀 더 세분화시켜 살펴보면,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은 문화 분야 종사자로 29만 1천여 명에 달한다. 다음으로는 치료직업 계통의 인력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의사와 여타 치료 부분 종사자들이 각각 12만여 명과 13만여 명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그 밖에 많은 규모를 차지하는 직업은

[그림 3] 1950~2012년¹⁾ 독일의 자유직업인 내 자영업자 규모의 연도별 발전상(2013년 1월 1일 기준)

(단위 : 천 명)



주 : 1) 각 해의 1월 1일 기준, 2012년 자료는 부분적으로 잠정적인.

2) 구 동독 시절인 1989년 9월 말에는 약 1만 6천 명의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구분된 자유직업적 활동이 있었음. 1989년의 동독 자료는 이 그림에 포함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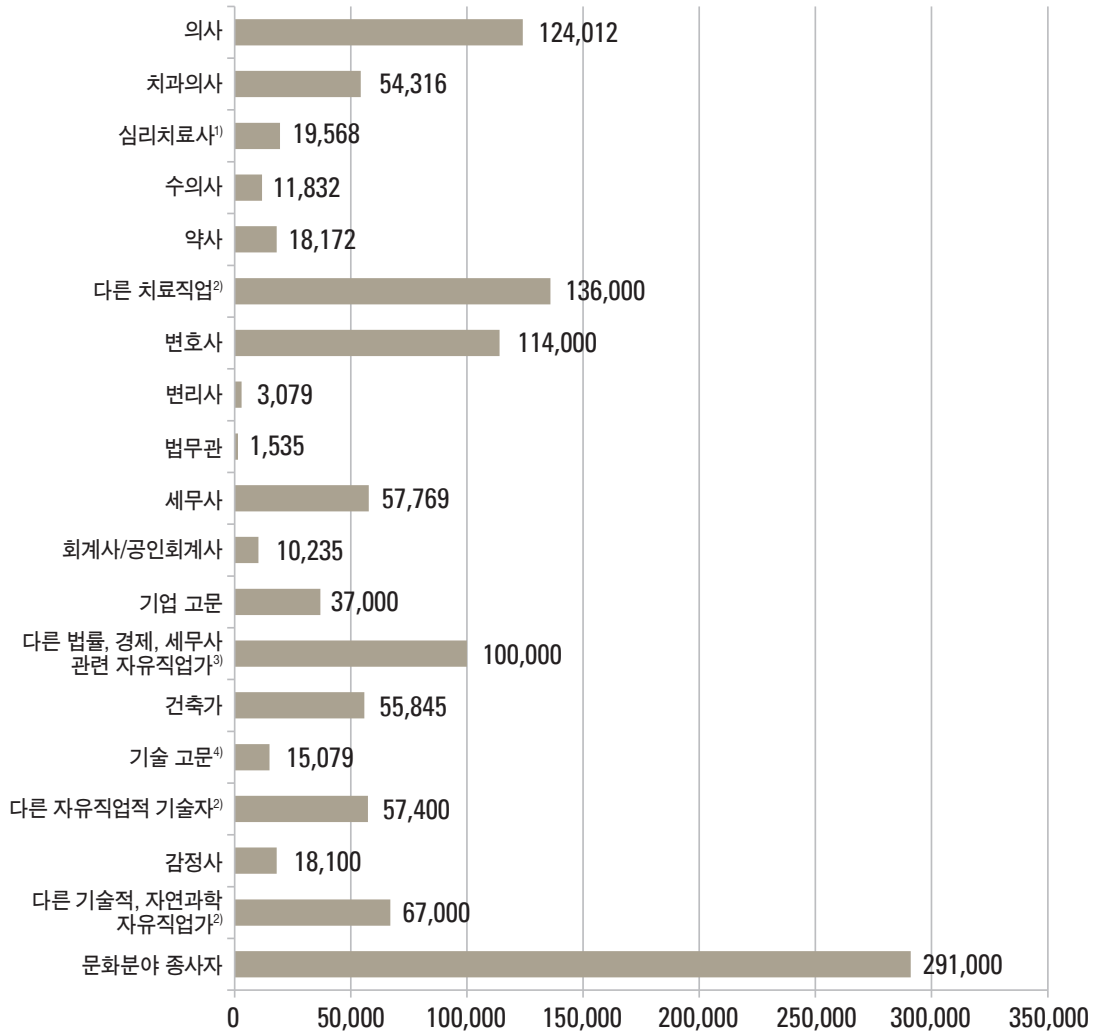
자료 : 직업연합들 및 공적 통계, BFB의 독자 집계, 부분적으로는 추정(자료: BFB).

변호사(약 11만 4천 명), 여타 법률, 세무관련 자유직업인(약 10만 명), 여타 기술 및 자연과학 관련 자유직업인(6만 7천여 명) 등이다. 세무사의 경우 약 5만 7천여 명이고, 건축사는 5만 5천여 명에 달한다(그림 4).

■ 자영업적 자유직업인의 사회적 안전망

독일 사회보장의 핵심적인 기초 원리는 ‘연대의 원칙(Solidaritätsprinzip)’이다. 이는 소위 사회국가(Sozialstaat)를 표방하는 독일의 국가 이념에 기반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Einer für alle, alle für einen)”라고 하는 모토로 압축된다.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를 위해, 젊은이는 노년층을 위해,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을 위해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위험 부담에 따른 보험료 지불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차별적인 지불을 기본으로 하며, 그러한 가치지향성을 기초로 하여 사회보험이 그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림 4] 독일의 자영업적 자유직업인의 직종별 분포(2012년 기준)



주 : 1) 심리치료사는 2011년 1월 1일 기준이며, 심리치료 의원(Praxen) 수입.

2) 다년간의 미시적 조사에 추정된 결과임.

3) 다년간의 미시적 조사에 추정된 결과, 직업돌봄사(Berufsbetreuer)를 포함함.

4) 전국엔지니어협회(Bundesingenieurkammer)에 속한 의무회원 수입.

5) 미시적 조사에 근거한 추정과 다년간의 KSK 통계임.

자료 : 직업연합들 및 공적 통계, BFB(연방자유직업연합)의 통계, 부분적으로는 추정된 것(자료: BFB)

자유직업인 사회보험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인식적 지향에 기반하나, 그들을 위한 별개의 사회보험 체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그들은 몇 가지 방식으로 기존의 사회보험에 다소 특수한 방식으로 통합되어 있다. 다만, 그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문화예술인들의 경우 소위 '예술인 사회기금'이라는 별도의 사회보험 체계를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의 영역을 중심으로 특수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절에서는 먼저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 영역들에서 자영업적 자유직업인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책임과 권리를 부여받는지 살펴보겠다. 그 다음으로 예술인 사회기금의 특성을 짚어 보고,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상에서 자유직업인의 사회적 안전이 어떠한지 개관해 보도록 하겠다.

건강보험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은 1880년대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입법에 기초해 1883년 노동자 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당시 보장 대상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였고, 보험의 성격은 강제보험이었으며, 운영은 직업별·지역별 조합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역사적으로 이어져 오던 직업별 보장 체계가 공적 건강보험의 중심 원리로 발전되어, 국민의 약 90% 이상이 공적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오늘날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은 치료뿐 아니라 질병 예방을 촉진하는 것까지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 주요 보장 영역은 의원 진료, 병원 진료, 의약품 구입, 치료비 지출, 임신 등이다.³⁾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 체계는 2007년에 단행된 개혁 이후 큰 변화를 겪었다. 개혁 이전까지는 근로자와 농민, 예술인 및 출판업자 사회보험법으로 보호되는 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장애인 등이 의무가입 대상자였다. 민간보험은 급여 보충의 의미가 없었고, 여기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자영업인, 소득 상한을 초과하는 근로자, 그리고 공무원 등이 가입했다. 다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자일지라도 공적 보험에 임의가입하는 것이 가능했다.⁴⁾ 개혁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특히 2009년 1월 1일 이후로는 모든 개인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

3) 전광석(2008), 『독일 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 박영사, p.44.

4) 전광석, 위의 책, p.119.

도록 바뀌어졌다. 재원 조달 면에서도 세금과 함께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건강기금(Gesundheitsfonds)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세전수입(Bruttoeinkommen)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비율대로 책정된다(2013년 기준 15.5%).

개혁 전까지 자영업적 자유직업인들은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었다. 개혁 이후에는 자신이 가장 최근까지 보장받았던 보장 체계로 돌아가게 했다. 공적 건강보험으로 보장받던 자영업자들은 다시 자신이 예전에 가입했던 질병금고로 돌아가면 되었고, 2007년 4월 1일 이후 부과되어야 했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도록 했다. 민간 보험에 가입해 있던 자영업자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제외되었다. 민간 건강보험에서의 보험료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인상된다. 이전에 건강보험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은 공적 질병보험이나 민간 질병보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두 보험 측에서는 자유직업인 자영업자들이 가입을 희망할 경우 거절할 수 없도록 되었다. 민간 건강보험에는 최소한 소위 ‘기본 요금’을 납부하고 가입할 수 있다. 기본 요금에 대한 보험금은 성별과 나이에 따르며(그 이상의 위험분담금 없이), 공적 의료보험에서의 평균적인 보험료를 넘지 않는다(BFB 웹사이트⁵⁾).

산재보험⁶⁾

독일의 산업재해보험에서는 동업조합(Berufsgenossenschaften)이 산재보험의 운영 주체가 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직역별로 26개의 동업조합(예컨대, 교통경제부문 동업조합, 의료서비스와 복지-돌봄부문 동업조합), 지역별로 구분된 9개의 농업 분야 동업조합, 32개의 공공부문 동업조합(예컨대, 소방 및 재난금고 동업조합 등)이 보험의 운영 주체로 활동을 하도록 짜여져 있다. 공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보장되도록 되어 있다. 산재보험은 이윤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된다. 그 주체가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다원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며, 재해예방과 보상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⁷⁾

5) <http://www.freie-berufe.de/themen/soziale-sicherung/kranken-und-pflegeversicherung.html>

6) BFB 웹사이트 <http://www.freie-berufe.de/themen/soziale-sicherung/unfallversicherung-und-arbeitsschutz.html>

7) 전광석, 앞의 책, p.189.

모든 근로자는 산업재해로부터 의무적으로 보장되며, 자영업자는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미고용 종사자, 즉 미니잡 또는 근로자로서의 인턴 등에게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보장된다. 재원조달은 적립방식으로, 보험료는 100% 사용자가 부담하며, 보험의 보장 영역은 산재예방, 사고, 직업병 등이다. 급여지급은 상해 정도로 구분된 등급(Klasse)에 따라 현물로 지급되며, 치료비, 재교육, 장애연금, 장제비 등을 보장한다.

기업가와 자유직업인을 위한 보험의무규정의 실행은 26개의 산업별 동업조합 중 9개가 자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경우 해당 동업조합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동업조합중앙회(Hauptband der gewerblichen Berufsgenossenschaften)에 문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유직업인들의 경우 ‘행정부문 동업조합(Verwaltungs-Berufsgenossenschaft: VBG)’이 그들에 대해 권한을 갖는 동업조합이다. 의료인들을 위해서는 ‘건강관련 서비스 및 복지사업 동업조합(BGW)’이 권한을 지닌다.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산과, 안마사, 치료목적목욕사(Medizinische Bademeister), 발관리사(Fußpfleger), 언어교정사(Logopäden), 간병인 등은 BGW에서 자유직업인으로서 보험의무를 지닌다. 자영업자 중에서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심리치료사, 아동 및 청소년 심리치료사, 자연치료사(Heilpraktiker), 그리고 약사 등은 보험의무로부터 자유롭다.

연금보험과 노후보장

독일의 공적 연금보험과 노후보장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대의 원칙에 의거하여 세대 간 협약 원리에 기초한다. 연금보험은 1952년에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뀌었다. 재원조달은 사용자와 피고용자가 각각 50%씩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총 소득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며, 2013년 기준으로 보험료율은 세전소득의 18.9%이다. 보장 영역은 67세 이상 연금수급 대상자에게 월정연금, 직업불능 시의 연금, 유족 연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자유직업인들의 경우, 연금보장의 형태는 직업의 종류와 종사상지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것은 각각 ① 보장기구(Versorgungswerk)에 자동가입한 경우, ② 법적으로 의무적이라고 규정된 경우, 그리고 ③ 연금보험의 의무가 없는 경우 등이다.

첫째, 일반적으로 카탈로그 자유직업인들은 그 직업의 수행과 동시에 직업협회로의 가입이 강제적이며, 그들의 직업수행 시의 경제적 위치에 (고용자든 자영업자든) 상관없이 직업협회에서 그들의 연금보험과 노후보장을 관리한다. 대체로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건축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와 공인회계사, 엔지니어, 심리치료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장기구로의 가입이 의무적이면서 동시에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협회(Kammer)로의 가입도 의무화되어 있는 회원인 경우, 피고용직(Angestellt-Tätige)일지라도 보장기구에 힘입어 공적 보험의 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공적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는 이중요구는 엔지니어와 심리치료사를 제외한 모든 직업 계층들에 해당한다. 보장기구에서의 직능적 보장(berufsständische Versorgung)은 지방법에 기초하여, 해당 직업 집단(Berufsstände)의 자치기관으로서 회원들의 포괄적 노후보장, 직업불능 시의 보장, 유족보장(Hinterbliebenenversorgung) 등을 제공한다. 상부 조직은 보장기관협회(Versorgungseinrichtungen e.V.)의 직업능력상 노동조합이며, 그 안에서 보장기구들과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보장기구를 통하여 소속 자유직업인들은 노후보장을 스스로 책임지고 국가의 부담을 덜어 준다.

보장기구가 책정하는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개인 소득관계를 따르며, 각각의 보장기구별로 직업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정할 수 있다. 그 밖의 방법으로는 공적 보험의 최대 보험료의 절반, 또는 전체를 기본무보험료(Regelpflichtbeiträge)로 책정하는 것 등이 존재한다. 보장기구에 속한 회원의 보험료 수준은 평균적으로 공적 연금보험보다 더 높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높은 보험료 지불로 인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연금을 보장받는다.

둘째, 자유직업인들 중에는 사회보장법 제2조제1항제1절에 따라 독일 연금보험연합(과거 연방사무직보험청)에 연금보험의 의무를 지닌 이들이 있다. 독일 연금보험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교사, 교육자, 돌봄직종 종사자, 조산보조원, 해양조종사, 예술인과 기자, 가내사업자, 해양어업인, 유사 자영업자 및 특정 수공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그러한 보험가입의 대상이다.

① 교사(Lehrer): 학교, 대학교, 또는 다른 교육적 수업에서 자신의 지식, 재능, 숙련된 기술 등을 그룹 또는 1대 1의 형식으로 강의하는 사람, 과외수업(Nachhilfe), 즉 골프나 에어로빅 강사, 코치, 트레이너, 사회자, 감독관, 강습인 또한 교사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 경우 정기적으로 매달 450유로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부업으로서도 마찬가지).

- ② 교육자(Erzieher): 아동이나 청소년의 인성교육 및 성격 형성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유치원, 탁아소 교사나 탁아모(Tagesmutter)도 의무보장에 포함된다.
- ③ 돌봄직종(Pflegeberuf) 종사자: 병원, 조산원, 영아돌봄이(Säuglingspflege), 또는 유아돌봄업(Kinderpflege)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보장이 된다. 예를 들면 간호사, 신체교정강사(Ergotherapeuten), 언어치료사 등이다. 단, 스포츠 마사지사는 의무보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조산보조원(Hebammen): 산과는 의무보장의 피고용자로서 일할 때만 의무보장이 가능하며, 병원에서 자유직업적 직종으로 증명된 산과도 의무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 ⑤ 해양조종사(Seelotsen): 공적인 위탁(국내 조종, 여행 조종, 해협 조종에는 포함되지 않음)으로 자유직업적 업무에 종사하는 해양조종사들 또한 의무적으로 보장된다. 독일 해양교통연금(Deutsche Rentenversicherung Knappschaft-Bahn-See)이 그에 대한 권한이 있다.
- ⑥ 예술인과 기자: 후술할 '예술인 사회기금'의 가입 기준에 따라 가입된 모든 음악, 미술 관련 종사자와 기자, 출판업계 종사자는 예술인사회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장된다.
- ⑦ 가내사업자(Hausgewerbetreibender): 작업장에서 받은 위탁과 영업상 회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의무보장이 가능하다. 공익 기업이나 공적 법인 또한 위탁자가 될 수 있다. 지시 권한 아래 있지 않으며 피고용자로서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위탁자가 기업 위험 부담이 있고 피고용자에 따라 이득을 얻는 상황에서는 피고용자로서의 자유직업인도 경제적으로 종속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⑧ 해양어업인(Küstenschiffer와 Küstenfischer): 선박을 소유한 해안어업인 혹은 선박을 소유하지 않은 어부들 또한 의무적으로 보장된다.
- ⑨ 피고용자와 유사한 자영업자: 위탁자를 위해서 특정기간 또는 일시적으로 일하는, 보험의무 없는 고용주로서의 자영업자
- ⑩ 특정 수공업자

끝으로, 보험의무가 공적 연금보험에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직업적 보장기구들(berufsständische Versorgungswerken)을 지닐 수 없는 특별한 자유직업인들은 부가적으로 개인적인 노후보장을 운영해야 한다. 그들의 사적 노후보장도 강제적이다. 이 경우 국가가 개인적

인 노후보장의 의미와 필요를 인정해, 그것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⁸⁾

예술인 사회기금⁹⁾

예술인 사회기금은 자영업적 자유직업인의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인 예술과 출판업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을 위하여 1983년 1월 1일에 출범했다. 이를 통해 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측면에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해 오고 있다. 예술인 사회보험은 의무보험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다른 사회보험에서의 피고용자와 마찬가지로, 가입 예술인은 보험금의 절반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술인 사회기금에서 충당하는 방식이다. 기금의 재정조달은 연방 보조금에서 40%, 회사의 예술인 사회분담금(Künstlersozialabgabe)에서 60%가 채워진다. 예술인 사회기금 내에 평가자(Verwerter)를 두어, 그들로 하여금 가입자들의 예술적 내지 출판상의 성과를 평가하게 한다. 그들은 갤러리, 음악과 연극·연출가, 라디오 및 TV 방송국, 출판사 등의 영역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예술인 사회기금을 통해 보호되는 예술인이란 음악, 설치 또는 회화 미술에 종사하는 창조, 수행, 혹은 교육을 행하는 이들로 정의된다. 출판업자는 소설가, 기자 또는 다른 형태의 저술가를 가리킨다. 이들의 가입 여부의 결정은 예술인 사회기금이 지니고 있으며, 그것에는 몇 가지 주요한 기준이 있다. 첫째, 예술인 사회기금에서 보장받으려면 최소 소득이 1년에 3,900유로가 넘어야 한다. 단, 직업생활 초년생들(Berufsanfänger)은 예외다. 둘째, 직업생활 초년생들의 경우, 그들의 소득이 최소 소득 한도에 미치지 못할 때, 직업생활을 시작한 지 처음 3년간은

8) 그 가운데 특히 고소득자를 위한 노후보장 모델로는 2005년부터 시행된 소위 '뤼럽연금(Rürup-Rente)'이 있다. 이는 특별히 고소득자를 위한 개인적 노후보장으로, 그것에 가입하는 결정을 장려하기 위해 보험료에 대해 세금 공제가 이루어지게 했다. 그것은 국가적인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금 혜택으로 된다. 세금 공제는 2025년까지 지불했던 보험금의 100%가 되며, 최대 공제 금액은 2만 유로까지다(기혼자는 4만 유로). 2013년엔 76%의 보험금을 소득세 신고 내에서 특별 지출로 신고할 수 있다. 2014년에는 78%까지, 2015년에는 80%까지 보장된다. 매년 보험료 증가에 따라 보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뉘럽연금으로 1년에 5천 유로를 지불한다면, 올해 3,800유로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9) BFB 웹사이트 <http://www.freie-berufe.de/themen/soziale-sicherung/kuenstlersozialversicherung.html>

보장받는다. 단, 직업생활 초년생들이라고 할지라도 최소 소득 한도에 미치는 사람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셋째, 자영업자 예술인, 저술활동이 기본적으로 독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예술인, 저술가들은 피고용자로서 일할 수 없다. 단, 견습생이나 경미고용(geringfügig Beschäftigte)은 예외다. 다섯째, 다른 예술적이지 않은 자영업이나 고용관계에 종속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얻는 부수입이 매달 400유로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술인 사회기금을 위한 의료보장과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다. 여섯째, 예술적 또는 저술활동을 하는 자영업에서의 소득이 자신의 총 소득에서 1/6보다 적을 때, 예술인 사회보험에서의 보험의무는 취소된다.

한편, 예술인 사회보험에서 보장하는 연금, 건강, 장기요양보험의 실행은 예술인 사회기금의 소관이 아니다. 단지 건강보험기금과 장기요양보험기금(일반적인 지역질병금고, 대체금고, 사업장 및 길드의 질병금고) 및 연금보험의 서비스 실행기구에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해당 실행기구에서 책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원리를 따른다. 보험관계의 보장은 공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며, 연금 실행기구는 그렇지 않다.

고용(실업)보험¹⁰⁾

독일의 실업보험(Arbeitslosenversicherung)은 1927년 고용알선과 실업보험법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독일 실업보험의 관리운영 주체는 노사정 삼자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는 연방 고용공단(BA)이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가입해 각각 50%씩의 기여금을 지불함으로써 재원을 조달한다. 피고용자를 위한 보험급여는 고용알선, 직업교육, 재교육, 실업급여 제공 등이며, 사용자를 위한 급여는 고용지원, 대체근무지원, 작업단축지원금과 건설업고용지원금 등이다. 독일 고용보험에서의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자'이다. 따라서 자영업적 자유직업인들은 다른 모든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실직할 경우에도 공적 실업보험(Gesetzliche Arbeitslosenversicherung: GAV)의 보장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다.

독일의 고용보험은 2002년 슈뢰더 정부 시절, 소위 '하르츠(Hartz) 개혁'으로 큰 변화를 겪

10) BFB 웹사이트 <http://www.freie-berufe.de/themen/soziale-sicherung/arbeitslosenversicherung.html>

었다. 하르츠 개혁은 현대 노동시장이 현대 경제체제 내에서 빠르게 변화하면서, 그에 따른 구조적인 상황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발맞추어 노동시장 내의 서비스 제공 방식과 내용을 개선한다는 목적 하에 2002년부터 4단계의 개혁을 통해 구현되었다.¹¹⁾ 하르츠 III장(Harz III)에서는 ‘자율적 실업보험(Freiwillige Arbeitslosenversicherung)’을 통해 자영업자와 생계형창업자들(Existenzgründer)이 실직을 해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특히 창업자 지원에 대한 규정은 명시적으로 생계형 창업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지원을 도모하려 했다. 그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영업사회보험법(Gewerbliches Sozialversicherungsgesetz: GSVG)에 따라 연금보장을 받는 자(노령연금(Alterspension)의 경우 대기기간 완료 시인 약 60세 이후)를 제외하고, 자영업자들도 자율적으로 공적 실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모든 자유직업인은 자신이 채용한 직원에 대해 14일 이내에 연방고용공단에 채용 신고를 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율적 실업보험의 가입조건은 일반 실업보험과 동일하다. 자영업적 업무를 최소 주당 15시간 이상 행하며, 신청자가 지난 24개월 동안 생계형 창업을 명목으로 최소 12개월 이상 공적 실업보험의 보장을 받았던 경우, 경우에 따라 생계형 창업의 명목으로 최소한 짧은 시간 동안 실업수당 또는 그 이전에 실업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바꿔 말해 최근 2년간 12개월 동안 의무보험 사항을 증명할 수 없는 과거의 자영업자는 이전처럼 자율적 실업보험에 가입될 수 없다. 자율적 실업보험으로의 가입 신청은 자영업 개시 후 3개월 이내(종래에는 한 달 전)에 해야 한다.

자율적 실업보험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소득수준과 관계가 없다. 일반적인 실업보험료는 2011년을 기준으로 서독의 자영업자들의 경우 매월 38유로, 동독의 경우 32유로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의무보험관계인 일반 피고용자와 자율적 보험관계인 자영업자 간의 급여불균형 등 문제가 발생하는 관계로, 2012년부터 자율적 실업보험은 급여인상(Leistungserhöhung)없이 보험료만 2배 인상되었다(단, 생계형 창업자의 경우 창업 첫 해에 보험료의 절반씩만 납부 가능). 자영업자 사회보험법의 3단계 분담금 원칙(Beitragsgrundlage)에 따라, 2013년의 경우 1단계 해당자는 77.70유로를, 2단계 해당자는 155.50유로를, 3단계 해당자는 233.10유로를 책정된 납부액으로 매달 납부해야 한다.

11) 전광석, 앞의 책, p.200.

원칙적으로 실업보험상의 권리보장 기간은 한 근로자가 실직에 처하기 이전 최근 3년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실업보험분담금을 납부했는지에 달려 있다. 보험료 납부 12개월이 지난 후에는 6개월간의 기본청구권을 보장받는다. 피보험자가 이전 24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을 시에 12개월의 최대 보장기간을 보장받는다. 나머지에 대한 요구권(Restanspruch)은 (예를 들면 4개월 정도라면), 새로이 얻어진 청구권이 자유 실업보험에 (예를 들면 기본청구권 6개월에) 합산되는 식으로 (=10개월) 청구된다.

실업급여의 액수는 추정임금(vorgestellte Lohn)을 따르게 되어 있다. 고용공단이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위한 중계하는 과정에서, 그 일자리의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측정하면서 가상의 보수, 즉 추정임금을 산정한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자영업자(höher qualifizierte Selbstständige)는 그에 따라 높은 액수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직업적 능력, 가족 상황과 자녀수에 따라 실업급여는 매달 약 400~1,400유로 정도로 책정이 된다. 매달 165유로까지는 실업급여와 함께 추가 소득으로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현재적 수입(gehende Einnahmen)은 실업수당에 계산된다.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이미 자율적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은 자동적으로 새로운 법에 따라 계속해서 보장이 된다. 자율적 실업보험으로의 신규 가입자는 보험관계를 5년이 지난 후에, 각각 3개월 단위로 해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보험자가 3개월치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라면 보험이 취소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는 노동시장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실업을 중단할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고용공단으로부터 중계된, 특별한 무리가 없는 일자리는 수용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보장된 자영업자들이 그들의 보험을 이미 두 차례나 중단한 적이 있고 중단된 동안 실업수당을 수령했다면, 이후에 새로운 신청은 불가능하다.

■ 맺음말

자영업적 자유직업인들은 근래에 그 수가 100만 명 이상에 달하면서, 이들을 사회보험의 테두리 내에 두는 가능성을 구축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가 커졌다. 그러면서 4대 보험의 모든

영역에서 이들이 사회보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개혁이 단행되었다. 이는 종래의 독일의 사회보험 체계의 큰 틀을 유지하되 일부 부분적 수정을 하기도 하고, 별도의 새로운 틀을 만들기도 하는 식으로 된 것이다. 종속적 근로자가 아닌 이들에게 이러한 식의 사회적 안전망의 기회가 보편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은,¹²⁾ 점차 독일의 사회보험 체계가 종래 산업사회의 임금근로자 중심에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근로관계 및 직업활동을 수행하는 집단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상황은 독일의 안정적인 직업훈련과 자격시스템 및 법적으로 명확한 자유직업인의 신분 등과 같은 문화적·제도적 기제들이 배경에서 작동하는 위에서 구축된 것임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KLI**

12) 이 글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보다 광의의 프리랜서에 속하면서도 자영업적 자유직업에 속하지 않는 이들의 사회보험으로부터의 배제의 문제(예컨대, 도급계약(Werkvertrag) 수행자들)는 여전히 존재한다.